

장학규정

(제정 1976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및 교외장학재단 또는 장학금을 기부한 교외인사 등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3.12.27.>

제3조(사무관장) (삭 제)

제2장 장학금

제4조(지급대상) 본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
1.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, StarT Program 인증 점수 취득자 <개정 2013.12.27.>
2. 가계형편이 곤란한 자 <신설 2013.12.27.>
3.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
4.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자와 목회자 자녀
5.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(손)자녀,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<개정 2013.12.27.>
6. 예체능 특기자,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자 <개정 2013.12.27.>
7.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<신설 2013.12.27.>
8. 교내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<개정 2013.12.27.>
9. 본교 교직원 자녀와 학원봉직자 자녀 <개정 2013.12.27.>
10.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4조의 2(장학금의 구분) 삭제 <조 삭제 2013.12.27.>

제5조(장학금 수혜금액 제한) ① 장학금이 해당학기에 두 가지 이상 중복될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10.9.14, 2011.12.28>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. <개정 2010.9.14, 2011.12.28, 2013.12.27.>

1. 근로, 봉사, 기타 조건부로 수혜하는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2. 경비성 장학금(해외연수, 해외탐방, 교환학생, 도서비, 기숙사비, 특별교육지원비, 생활비) <신설 2013.12.27.>
3. 1회성 포상 및 동기부여 성격의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
4. 그 밖에 총장이 별도로 정한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
제6조(수혜제한) ① 해당학기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28, 2013.12.27.>

1. 휴학자(다만, 등록 후 휴학자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지급 가능) <개정 2013.12.27.>
2. 수업연한(8개 학기. 다만, 건축학과는 10개 학기)을 초과하는 자 <개정 2013.12.27.>
3. 자퇴자 및 제적자 <개정 2013.12.27.>
4.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<개정 2013.12.27.>
5.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<개정 2013.12.27.>
6. 직전학기 평균평점 2.5 미만인 자(다만, 특기자장학금, 섬김장학금, 장애대학생장학금, 장학사정관제장학금, 특수환경지원장학금은 2.0 미만) <개정 2013.12.27.>
7.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<개정 2013.12.27.>
8. 전과(부), 복학생 및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제외 <개정 2013.12.27.>
9. 그 밖에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

② StarT장학금, 기탁에 의한 장학금, 계약학과 장학금, 근로성 장학금, 봉사성격의 장학금, 동기부여성 장학금,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장학금은 제1항제2호, 제6호 및 제7호, 장애대학생장학금은 제1항제7호, 신·편입생 첫 학기는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수혜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12.27., 2016.7.19.>

③ 제1항제4호의 피징계자는 다음과 같은 시일이 경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3.12.27.>

1. 유기정학까지의 피징계자로 징계 당한 학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 <신설 2013.12.27.>
2. 무기정학 이상의 피징계자로 징계 당한 학기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<신설 2013.12.27.>

제7조(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)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1. 교내장학금: 본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으로써 종류와 수혜자격 및 금액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2. 교외장학금: 교외 장학단체(국가기관을 포함한다) 또는 개인이 기탁한 장학금으로써 지정된 제시요건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국가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장학금 운영규정」을 따른다.

[본조 개정 2013.12.27., 2016.7.19.]

제3장 장학심의위원회

제8조(장학심의위원회) 본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구성

- 가.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

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5.18>

나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2. 기능

가. 장학금 예산 및 운영정책에 관한 심의

나. 장학생 자격요건, 지급 기준에 대한 심의

다. 장학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
라. 그 밖에 장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

3. 회의

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시작 1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또는 장학위원 3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하고, 장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이 규정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198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198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